

# 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| 1,065,000,000 | 31,950,000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| 968,400,000   | 29,052,000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| 96,600,000    | 2,898,000  |
|      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| 79,300,000    | 2,379,000  |
|      | 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| 44,100,000    | 1,323,000  |
|      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| 35,200,000    | 1,056,000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| 17,300,000    | 519,000    |
|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| 7,108,000     | 213,240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| 2,910,000     | 87,300     |
|      |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| 200,000       | 6,000      |
|      |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  | 1,177,000     | 35,310     |
|      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| 5,905,000     | 177,150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,978,22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4,9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